

무배당 AXA초간편건강보험(갱신형)2601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장기 - 장기상해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등

(1) 보험종목의 명칭 : 무배당 AXA초간편건강보험(갱신형)2601

(2) 회사는 자동갱신시 보험종목의 명칭에 갱신형임을 인식 할 수 있는 용어를 추가하여 다르게 할 수 있음.

3. 보험의 목적

피보험자의 신체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1) 최초계약

구 분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보통 약관	(갱신형)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초간편고지)	10년	40세~ 80세	전기납	월납 연납
특별 약관	(갱신형)암진단금(초간편고지) (갱신형)5대고액치료비암진단금(초간편고지) (갱신형)3대특정암진단금(초간편고지) (갱신형)암수술(초간편고지) (갱신형)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초간편고지) (갱신형)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초간편고지) (갱신형)뇌출혈진단금(초간편고지)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초간편고지) (갱신형)뇌출혈수술(초간편고지)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수술(초간편고지)				
제도 성특 별약 관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보험료자동이체납입 제재위반부담보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장애인전용보험전환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	-	-	-

(1) 갱신계약

구 분		보험 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보통 약관	(갱신형)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초간편고지)	10년	50세~ (갱신종료보 험나이 ^{주1)} - 보험기간)세		
		1~9년	(갱신종료보 험나이 ^{주1)} - 보험기간) 세		
특별 약관	(갱신형)암진단금(초간편고지) (갱신형)5대고액치료비암진단금(초간편고지) (갱신형)3대특정암진단금(초간편고지) (갱신형)암수술(초간편고지) (갱신형)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초간편고지) (갱신형)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초간편고지) (갱신형)뇌출혈진단금(초간편고지)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초간편고지) (갱신형)뇌출혈수술(초간편고지)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수술(초간편고지)	10년	50세~ (갱신종료보 험나이 ^{주1)} - 보험기간)세	전기납	월납 연납
		1~9년	(갱신종료보 험나이 ^{주1)} - 보험기간) 세		
제도 성특 별약 관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보험료자동이체납입 제재위반부담보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장애인전용보험전환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	-	-	-

주1) 갱신종료보험나이 및 갱신주기

구분	갱신종료 보험나이	보험 기간	갱신주기
(갱신형)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초간편고지) (갱신형)암진단금(초간편고지) (갱신형)5대고액치료비암진단금(초간편고지) (갱신형)3대특정암진단금(초간편고지) (갱신형)암수술(초간편고지) (갱신형)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초간편고지) (갱신형)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초간편고지) (갱신형)뇌출혈진단금(초간편고지)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초간편고지) (갱신형)뇌출혈수술(초간편고지)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수술(초간편고지)	80세/ 90세/ 100세	10년 ^{주3)}	피보험자별 가입시점부터 매10년마다 계약해당일 ^{주2)}

주2)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피보험자의 나이가 갱신종료보험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자동으로 갱신됨

주3) 갱신담보의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으로 함. 단,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보험나이 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장기간으로 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함

5.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6.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7.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1) 목표 걸음수/목표 복약률에 따른 보험료 할인

가. 명칭

- 만성질환 헬스케어(걷기친구II, 복약친구)

나. 적용대상 및 적용기간에 관한 사항

① 이 계약의 체결 시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계약체결, 이행, 부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② 이 계약의 '목표 걸음수 및 목표 복약률 달성에 따른 보험료 할인'은 최초계약에 한해 적용되며 최초계약의 납입기일기준으로 보험료납입기가 월납이어야 가능함.

(단,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무효, 소멸, 해지 시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해지된 계약의 부활 또는 특별부활 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에는 '목표 걸음수 및 목표 복약률 달성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지된 계약의 부활 또는 특별부활 이후 '목표 걸음

수 및 목표 복약률 달성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7.(1).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③ 피보험자는 회사에서 정한 걸음수 측정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함)을 설치한 후 '앱'을 통해 AXA로부터 유효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목표 복약률 달성에 따른 보험료 할인'은 추가로 5가지의 필수복약정보(대상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 한하며 질환명, 질환을 진단받은 시기, 복약시간, 병원진료주기, 처방전 또는 약봉지 또는 복용중인 약의 사진 중 1가지)를 입력해야 함.

④ 매월 보험료 납입기일기준으로 이 계약이 '7.(1).나.'를 모두 충족하며 이전 달에 피보험자의 '(일)평균걸음수'가(소수점은 버림) 회사에서 정한 '(일)목표걸음수' 이상이고 피보험자의 '(월)복약달성률'이(소수점은 버림) 회사에서 정한 '(월)목표 복약률' 이상인 경우에 한해, 당월 보험료 납입기일에 '할인대상인 특별약관'의 영업보험료를 추가 20% 할인 적용함. (단, 선납보험료의 경우 '목표 걸음수 및 목표 복약률 달성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 제외됨.)

④ 아래 '할인대상인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이 계약(서비스)을 적용함.

할인대상인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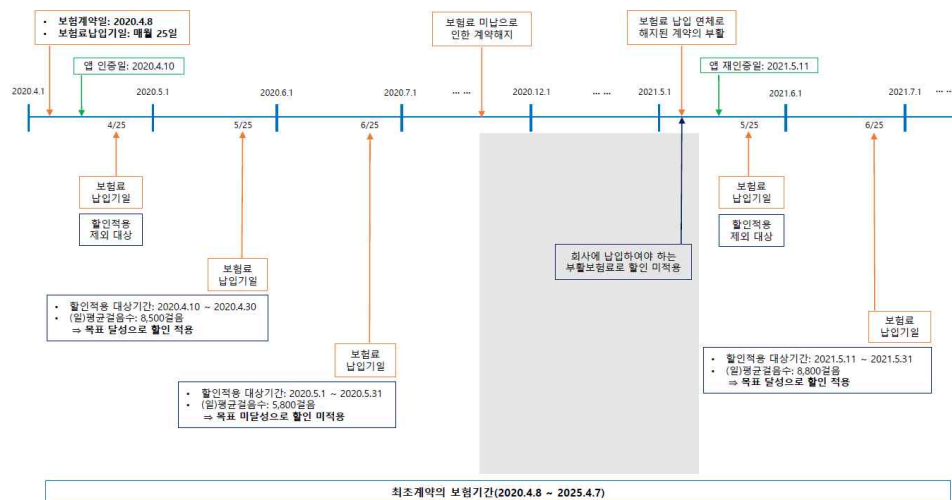
- (갱신형)뇌출혈진단금(초간편고지)
-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초간편고지)
- (갱신형)뇌출혈수술(초간편고지)
-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수술(초간편고지)

다. '목표 걸음수 달성에 따른 보험료 할인'의 적용

매월 보험료 납입기일기준으로 이 계약이 '7.(1).나.'를 모두 충족하며 이전 달에 피보험자의 '(일)평균걸음수'가(소수점은 버림) 회사에서 정한 '(일)목표걸음수' 이상인 경우, 당월 보험료 납입기일에 '할인대상인 특별약관'의 영업보험료를 5% 할인 적용함.(단, 선납보험료의 경우 '목표 걸음수 달성에 따른 보험료 할인' 적용이 제외됨.)

- '(일)평균걸음수'는 매월 보험료 납입기일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이전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회사에서 정한 '앱'을 통해 측정된 걸음수의 일평균이며, 피보험자는 회사에서 정한 '앱'을 매월 말일 24시 전에 동기화하여야 함. 만약 이전 월의 말일 전에 최종 동기화 한 경우, 익월로 넘어가는 자정에 달성여부가 자동으로 판정됨. 따라서 그 이후 동기화된 이전 월의 걸음수는 합산에서 제외함.(단, 이전 월의 말일까지 동기화하면 걸음수가 반영되며, 월이 바뀐 후에는 동기화되더라도 이전 월 달성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함)
- 보험료 납입기일기준으로 이전 월에 회사에서 정한 '앱'을 통해 AXA로부터 인증을 받은 날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날 부터 말일까지 회사에서 정한 '앱'을 통해 측정된 걸음수의 일평균으로 함.
- 보험료 납입기일기준으로 이전 월이 회사에서 정한 '앱'을 통해 AXA로부터 인증을 받기 이전인 경우에는 '목표 걸음수 달성에 따른 보험료 할인' 적용에서 제외됨.
- '(일)목표걸음수'는 월간 환산 일평균목표걸음수 7,000보로 함.
- - 1일 최대 인정 걸음수는 20,000보로 함.

[예시]'목표 걸음수 달성에 따른 보험료 할인'



라. '목표 복약률 달성에 따른 보험료 할인'의 적용

매월 보험료 납입기일기준으로 이 계약이 '7.(1).나.' 및 7.(1).다.' 모두 충족하며 이전 달에 피보험자의 '(월)복약달성률'이(소수점은 버림) 회사에서 정한 '(월)목표 복약률' 이상인 경우, 당월 보험료 납입기일에 '할인대상인 특별약관'의 영업보험료를 5% 할인 적용함.(단, 선납보험료의 경우 '목표 복약 달성에 따른 보험료 할인' 적용이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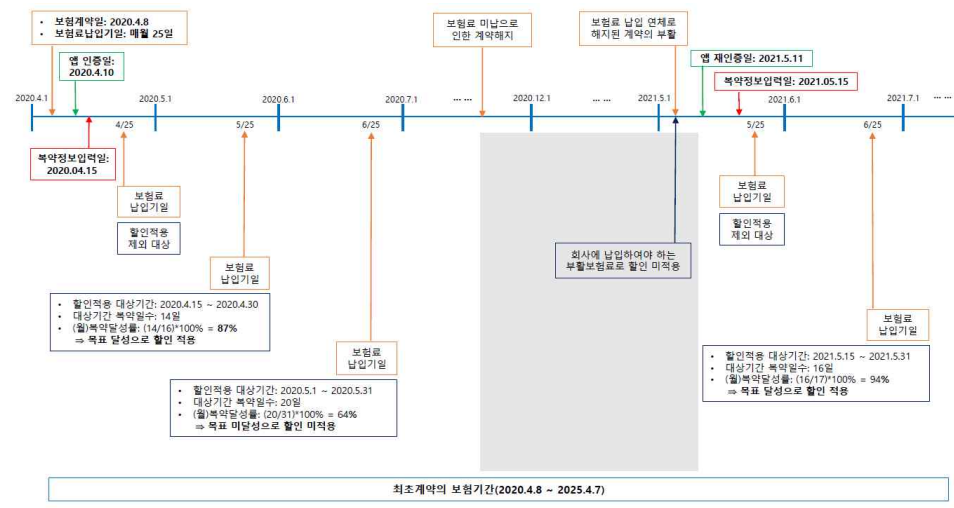
- '(월)복약달성률'은 매월 보험료 납입기일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이전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회사에서 정한 '앱'을 통해 입력한 (월)복약 달성률이며, 피보험자는 회사에서 정한 '앱'을 매월 말일 24시 전에 동기화하여야 함. 만약 이전 월의 말일 전에 최종 동기화 한 경우, 익월로 넘어가는 자정에 달성여부가 자동으로 판정됨. 따라서 그 이후 동기화된 이전 월의 복약 기록은 합산에서 제외함.(단, 이전 월의 말일까지 동기화하면 복약 기록이 반영되며, 월이 바뀐 후에는 동기화되더라도 이전 월 달성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함)

· 보험료 납입기일기준으로 이전 월에 회사에서 정한 '앱'을 통해 AXA로부터 인증을 받은 날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말일까지 회사에서 정한 '앱'을 통해 입력한 '(월)복약 달성률'로 함.

· 보험료 납입기일기준으로 이전 월이 회사에서 정한 '앱'을 통해 AXA로부터 인증을 받기 이전인 경우에는 '목표 복약 달성에 따른 보험료 할인' 적용에서 제외됨.

- '(월)목표 복약률'은 대상월 일수의 80%로 함.

[예시]'목표 복약 달성에 따른 보험료 할인'



※ 보험료할인을 위한 앱은 회사에서 정한 제휴업체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며,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책임은 제휴업체에 귀속되며 어플리케이션 제휴업체는 변경될 수 있음. 어플리케이션 제휴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 및 사유 등의 세부사항을 회사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게시, 우편, 휴대폰 문자(어플리케이션 알림 메시지를 포함),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사전에 안내함. 피보험자는 관련 내용 변경에 대한 당사의 사전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화를 통하여 변경에 대

해 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별도의 거부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가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봄. 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제공을 종료할 경우 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안내하고 기존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과 유사한 서비스로 대체하여 보험료 할인을 제공함.

8. 갱신계약에 관한 사항

(1) 대상 약관

(갱신형)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초간편고지)
 (갱신형)암진단금(초간편고지)
 (갱신형)5대고액치료비암진단금(초간편고지)
 (갱신형)3대특정암진단금(초간편고지)
 (갱신형)암수술(초간편고지)
 (갱신형)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초간편고지)
 (갱신형)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초간편고지)
 (갱신형)뇌출혈진단금(초간편고지)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초간편고지)
 (갱신형)뇌출혈수술(초간편고지)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수술(초간편고지)

(2) 갱신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갱신계약 보험료 통보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해당 피보험자의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함.

②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회사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함.
- 위의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시점의 이 계약의 적용기 초율(적용이율, 적용위험률,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및 연령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출함.

(3) 보험료 납입방법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전기간 납입하는 것으로 함.

9. 보험료운영에 관한 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보장성보험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내로 운영함

10.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를 적용

11.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며,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선납보험료는 해당 계약 해당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함

12. 추가적립보험료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13.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14.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이 계약의 적용이율 + 1.5%」로 함

15.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16. 조건부 인수를 위한 특별약관

(1) 이륜자전거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보험계약당시 또는 보험기간 중 이륜자전거를 소유, 사용, 관리함으로 인하여 이륜자전거의 운전과 관련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을 위험 정도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짐. 이륜자전거 운전자가 이륜자전거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을 부가 시에는 이륜자전거 운전을 제외한 직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상해급수를 적용함. 이륜자전거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전거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2) 특정신체부위및질병보장제한부인수 특별약관 관한 사항

- ①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 및 특정질병만을 제외한 기타질병을 보상함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음. 다만, 회사가 보험계약 인수기준에 따라 조건부 등으로 인수가 가능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부담보를 설정(이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음.

17. 암치료비((갱신형)암수술(초간편고지), (갱신형)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초간편고지)) 특별약관에 대한 안내

- (1) 회사는 (갱신형)암수술(초간편고지)을 보장함에 있어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 치료는 약관에서 정한 "암수술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항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계약자 확인을 통해 청약시점에 인식토록 함.
- (2) 회사는 (갱신형)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초간편고지)를 보장함에 있어 다음 3가지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계약자 확인을 통해 청약시점에 인식토록 함. 또한,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치료 관련 안내사항(【별첨3】참고)"을 교부함.
 -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초간편고지) 보장은 암세포의 특정 분자를 표적 공격하여 암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표적항암제의 처방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함.
 - 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란 항암약물치료 방법 중 하나로 표적항암제의 투여 치료를 말하며, 다른 항암약물치료 대비 발생빈도는 낮지만 고가의 치료비용 발생 보장을 목적으로 함.
 - 다.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는 식약처 허가 또는 심평원 승인요법에 한해 처방

- 시점을 기준으로 보장하며,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함.
- (3) (갱신형)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초간편고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진단서 이외에 회사가 별도로 마련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별첨4】참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18. 부가서비스에 관한 사항

(1) 건강친구 서비스

가. 명칭

- 건강친구

나. 서비스 제공조건 및 대상

-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시 "계약체결, 이행, 부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동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며 제공 대상은 피보험자 한함.

다. 서비스 제공기간

-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최초계약에 한해 적용(단,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무효, 소멸, 해지 시 서비스 제공이 중지됨)

라. 서비스 제공내용

건강친구 서비스	
대형병원 진료예약 및 전문의 안내	
건강검진 우대예약 대행	
전문의료진 건강상담	
건강 콘텐츠(단, 제공하는 건강 정보는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의사의 진료나 진단을 대신할 수 없음)	

마. '17.(1)'의 서비스는 회사가 제휴를 맺은 "서비스제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서비스제공회사"에 있음.

바. '17.(1)'의 서비스는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음.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세부사항을 회사 홈페이지 내 게시, 우편, 휴대폰 문자(어플리케이션 알림 메시지를 포함), 이메일 등을 통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사전에 안내함. 피보험자는 관련 내용 변경에 대한 당사의 사전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화를 통하여 변경에 대해 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별도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가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봄.

19. 기타

(1) 아래의 A 특별약관은 B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A	B
1	· (갱신형)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초간편고지)	· (갱신형)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초간편고지)

(1)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는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등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인수심사에 활용하지 않음.

(2)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

- (3)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안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으로 가입하는 경우, 회사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4) 판매채널
 범용(금융기관보험대리점(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한 판매는 제외)
- (5) 초간편고지형 상품은 유병력자 등 일반고지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함
- ① 초간편고지란 의적결함 및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의무 항목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함.
 - ② 계약자가 초간편고지형 상품 가입시 회사는 초간편고지형 상품과 일반고지형 상품의 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비교하여 안내하고, 일반고지형 상품의 경우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항목을 통하여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임을 설명하여야 함. 상기 계약자에게 안내한 사항에 대한 확인(【별첨1】초간편고지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참조. 이하 '초간편고지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이라 함)을 받아야 함. 다만,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확인 받을 수 있음.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약자가 '초간편고지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을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2. 전화를 이용하여 '초간편고지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의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경우
 - ③ 회사는 초간편고지형 상품 가입을 위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은 '초간편고지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별첨2】초간편고지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참조)만을 적용함.
 - ④ 회사는 계약자가 초간편고지형 상품의 최초계약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고지형 상품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일반고지형 상품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다만, 본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⑤ ④에 의하여 일반고지형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줌.
 - ⑥ 계약자가 초간편고지형 상품 가입시 회사는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등 간소화를 통하여 보험요율에 이미 반영된 사항을 인수심사시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활용하지 않음.
 - ⑦ 회사는 계약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일반고지형 상품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초간편고지형 상품을 추가로 가입하기 원하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의 표준체 여부를 재심사 하여 일반고지형 상품으로 가입하도록 안내함. 다만 해당 일반고지형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⑧ 회사는 ⑦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유병력자임을 알 수 없는 경우, 초간편고지형 상품 계약의 청약을 거절함.
 - ⑨ 회사는 일반고지형 상품의 가입금액 등 보장내용이 초간편고지형 상품

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함.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특별약관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장기 - 제도성 특별약관

2. 보험종목의 명칭 등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특별약관

3. 대상 계약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특별약관(이하 "납입유예특약"이라 한다.)은 보장성 인보험에 해당하는 계약 중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특약' 대상 상품에 해당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4.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보험계약(이하 "해당계약"이라 한다)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라 한다)를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계약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보험료의 대체납입으로 인하여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에서 대체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는 납입유예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계약자는 납입유예 신청시 보험료 납입이 유예될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한다)을 「6개월 또는 12개월」 중 하나의 기간으로 선택해야한다. 이때, 납입유예기간은 해당계약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주기 이상으로 선택 가능하다.

나. '가'에서 정한 「회사가 정한 사유」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납입유예 신청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배우자로 하며, 이하 같다)」의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이 때, 출산은 유산 및 사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2)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다) 기간 중인 경우

이 때,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해당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적용대상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 당시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다.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시에 약관 제6조(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시 구비서류)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없다.

(1) 이미 납입유예를 신청한 경우(신청 이후 취소한 경우 및 다른 제도성특약을 통해 납입유예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해당계약 기본계약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기본계약이 보험료 납입 면제된 계약 및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난 계약을 포함한다) 또는 해당계약 기본계약 보험료 의무납입이 종료된 계약

(3) 보험료 납입연체가 있는 경우. 단, 연체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4)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자동대출납입 또는 전액자동대체납입이 적용된 계약

(5) 중도인출 또는 보험계약대출이 적용된 계약

- (6) 해당계약 기본계약의 잔여 납입기간(기본계약이 갱신형인 경우 기본계약 갱신일까지의 잔여 납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단, 기본계약의 잔여 납입기간(기본계약이 갱신형인 경우 기본계약 갱신일까지의 잔여 납입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6개월 납입유예만 신청이 가능하다.
- (7) 납입유예기간 동안 납입하지 않을 해당계약 보험료(이하 "납입유예 보험료"라 한다) 총액이 납입유예 신청 시점 해당계약의 해약환급금(단, 보험료의 대체납입으로 인하여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에서 대체납입 예정인 보험료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단, "납입유예기간 중 갱신형보험의 갱신일이 도래하여 납입유예기간 동안 납입유예 보험료가 해당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유예 신청일 기준의 갱신형 보험의 요율에서 갱신시 연령 증가분만 반영하여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 (8) 납입유예기간 동안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에서 대체납입 예정인 보험료가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을 초과하는 날이 있는 경우.

5. 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 가. 납입유예를 신청한 경우 계약자는 신청 이후 최초 도래하는 해당계약의 납입 기일부터 납입유예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납입유예기간동안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하고 계약자적립액 등을 계산한다.
- 나. 납입유예기간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납입유예기간과 동일기간(이하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라 한다)동안 납입유예 보험료를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해야 한다. 이때,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의 보험료란 납입유예 신청 전의 해당 기간 납입기일에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이하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정상보험료"라 한다)를 말한다.
- 다. '가' 내지 '나'에도 불구하고 적립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를 적용하지 않는다. 납입유예기간 동안 적립보험료의 납입을 중지하며, 납입유예기간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적립보험료의 납입을 재개한다.
- 라. '나'에서 납입유예기간 중 해당계약 갱신형보험의 갱신일 도래시, 갱신형보험의 납입유예보험료는 갱신일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갱신 전 보험료, 갱신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갱신 후 보험료로 한다.
- 마.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유예 보험료와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정상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에는 해당계약 보통약관 일반조항의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해당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이때, 해당계약 보통약관 일반조항의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서 보험료는 "납입유예 보험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납입유예 보험료 전액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 바. '마'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계약 보통약관 일반조항의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조항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이때, 해당계약 보통약관 일반조항의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조항에서의 보험료는 "납입유예 보험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사. '가' 내지 '나'에도 불구하고 해당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으로 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 계약자는 즉시 납입면제 되기 전까지의 해당계약의 납입유예 보험료 전체를 일시 납입하여야 하며, 해당계약 보통약관 일반조항의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납입유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 아.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유예 취소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해당계약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또한 납입유예 취소 신청시 납입유예 취소 신청전까지의 납입유예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 자.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납입유예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차.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정상보험료를 선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유예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해야 한다. 이때, 선납 할인이 있는 경우에도 납입유예 보험료는 선납 할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 카. '자' 및 '차'의 경우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6. 기타

- 가.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및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보험가입금액 금액, 계약자, 납입기간 및 기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 나.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및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중도인출 및 중도인출, 보험계약대출 및 중도부가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 다.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의 종료,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및 납입유예 신청 및 처리로 인해 계약에 적용되는 주요사항을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안내한다.
- 라. 회사는 해당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각 지급금에 해당하는 해당계약의 납입유예 보험료"를 각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일시 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 마. 회사는 계약자가 납입유예를 신청할 때 계약자에게 납입유예특약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계약자 확인(【별첨5】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 특별약관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참조)을 받는다.
- 바. 그 외 기타사항은 대상계약에 준한다.

【별첨1】

초간편고지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1. 이 상품은 “초간편고지”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고지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초간편고지형 상품은 일반고지형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 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고지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고지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고지형 상품과의 보험료 비교 (예시)

상품명	(무)AXA초간편건강보험(갱신형)	(무)AXA올인원종합보험(갱신형)
보장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갱신형)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초간편고지) 1천만원: 상해로 사망 시 1천만원 - (갱신형)암진단금(초간편고지) 1천만원: 암진단 시 1천만원 - (갱신형)5대고액치료비암진단금(초간편고지) 1천만원: 5대고액치료비 암진단시 1천만원 - (갱신형)뇌출혈진단금(초간편고지) 1천만원 : 뇌출혈 진단시 1천만원 -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초간편고지) 1천만원 : 급성심근경색증진단시 1천만원 - (갱신형)뇌출혈수술(초간편고지) 100만원 : 뇌출혈로 진단받고 수술시 100만원 -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수술(초간편고지) 100만원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수술시 100만원 - (갱신형)암수술(초간편고지) 200만원 : 암수술시 200만원 - (갱신형)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초간편고지) 100만원 : 암으로 진단받고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100만원 - (갱신형)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초간편고지) 3천만원 : 암으로 진단받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시 3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갱신형)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1천만원: 상해로 사망 시 1천만원 - (갱신형)암진단금 1천만원: 암진단시 1천만원 - (갱신형)5대고액치료비암진단금 1천만원: 5대고액치료비암진단시 1천만원 - (갱신형)뇌출혈진단금 1천만원 : 뇌출혈 진단시 1천만원 -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 1천만원 : 급성심근경색증진단시 1천만원 - (갱신형)뇌출혈수술 100만원 : 뇌출혈로 진단받고 수술시 100만원 -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수술 100만원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수술시 100만원 - (갱신형)암수술 200만원 : 암수술시 200만원 - (갱신형)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100만원 : 암으로 진단받고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100만원 - (갱신형)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3천만원 : 암으로 진단받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시 3천만원
계약승낙	일반고지 상품 대비 질문항목(고지)을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

여부	간소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40세 남자 ○○○원/40세 여자 ○○○원 50세 남자 ○○○원/50세 여자 ○○○원 60세 남자 ○○○원/60세 여자 ○○○원 ※ 기준 :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40세 남자 △△△원/40세 여자 △△△원 50세 남자 △△△원/50세 여자 △△△원 60세 남자 △△△원/60세 여자 △△△원 ※ 기준 :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위 내용에 대하여 모집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 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모집자 확인]

보험설계사 _____ 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_____ 에게 설명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보험설계사 _____ (인/서명)

[계약자 확인]

보험설계사 _____ 으(로)부터 위 내용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_____ (인/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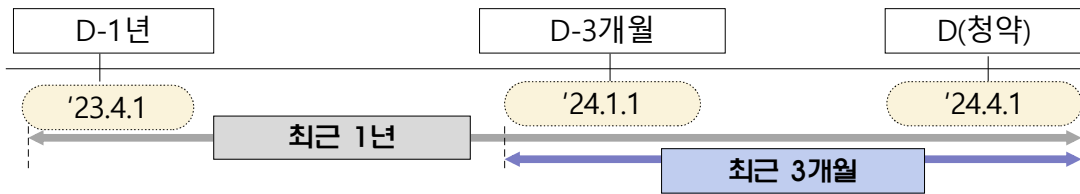
【별첨2】

초간편고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만약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질문 1번~4번에 대하여 알린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 이 청약서에서 ‘최근 ○개월 이내(◆년 이내)’는 청약일의 ○개월 전일(◆년 전일)부터 청약일까지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청약일이 4월 1일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 반면,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및 과거의 질병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해지일 이후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각 질문별 알릴의무 기간 중 짧은 기간을 알릴의무 기간으로 합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최근 1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제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 최근 5년 이내에 아래의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① 암 ② 제자리암 ③ 경계성종양 ④ 간경화 ⑤ 협심증 ⑥ 급성심근경색증 ⑦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외부 환경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1) 근무처 2) 근무지역 3) 업종
4)취급하는 업무(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 또는 **직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사실(예: 사무관리↔현장관리)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1.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5-2. "예"인 경우 운전 차종 (,)

- 1)승용차(영업용) 2)승용차(자가용)
3)승합차(영업용) 4)승합차(자가용)
5)화물차(영업용) 6)화물차(자가용)
7)이륜자동차(영업용)
8)이륜자동차(자가용)
9)건설기계 10)농기계
11)기타()

※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차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둘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하나의 차량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십시오

년 월 일 AXA손해보험주식회사 귀중

【별첨3】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치료 관련 안내사항

Q1) 표적항암약물치료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항암약물치료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A1-1) 암의 성장과 진행에 관여하는 특정한 분자의 활동을 방해하여 암이 성장하고 퍼지는 것을 막는 약제를 「표적항암제」라고 하고, 이러한 「표적항암제」를 사용하여 치료하는 것을「표적항암약물치료」라고 합니다.

A1-2) 표적항암약물치료는 세포독성항암제를 사용하는 기존 항암약물치료에 비해 정상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며, 기존 치료법에 비해 생존율을 향상시킨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Q2) 표적항암약물치료는 만능 치료법인가요?

A2) 표적항암약물치료는 몇몇 암종의 치료에서는 패러다임을 변화시켰지만 절대 만능 치료법이 아닙니다.

- ① 표적항암약물치료에 사용되는 표적항암제는 암세포가 가진 특정한 물질(분자)을 표적하여 암세포를 공격하고 이를 통해 치료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특정한 물질(분자)을 표적하여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법은 각 표적항암제의 작용 기전에 따라 다양합니다. 따라서 표적항암약물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각 표적항암제가 작용하는 특정 표적인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검사결과 및 그 외 임상 정보 등을 고려하여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표적항암약물치료는 표적항암제 가격이 다른 일반항암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이므로 많은 치료 비용을 요합니다.
- ③ 표적항암약물치료는 치료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투약을 필요로 합니다.
- ④ 표적항암약물치료는 암에 내성이 생기는 경우 효과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Q3) 모든 환자가 표적항암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3-1) 표적항암약물치료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암세포가 가진 특정 분자를 표적하여 암세포를 공격하고 이를 통해 치료의 효과가 발현됩니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암을 진단받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이 특정한 표적인자가 나타나는 환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환자도 있습니다.

A3-2) 표적항암약물치료에 사용되는 표적항암제의 처방은 치료를 통해 충분한 치료의 효과가 기대되는 표적인자 보유환자에게만 이뤄집니다. 따라서 암의 치료 선택 과정에서 해당 전문의는 환자가 어떤 표적인자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처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Q4) 표적항암약물치료는 부작용이 없는 건가요?

A4-1) 어떤 치료 방법이든 부작용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표적항암약물치료도 기존 항암약물치료보다는 부작용이 적지만 경우에 따라 특유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마다 체감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A4-2) 표적항암약물치료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피부발진, 발열 및 오한, 메스꺼움 및 구토, 설사 또는 변비, 부종, 관절통 및 근육통 등이 있습니다. 처방 전 표적항암약물치료로 유발될 수 있는 부작용은 반드시 전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고 투약하여야 합니다.

Q5) 암종별로 어떤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을 수 있나요?

A5) 암종별로 주로 처방되는 표적항암제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대표적인 암종 및 성분·의약품만을 기재한 참고자료 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표적항암제 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 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암의 종류	대표 성분명(국문/영문)	대표 의약품명(국문/영문)
폐암	게피티니브 Gefitinib	이레사 Iressa
	엘로티닙 Erlotinib	타쎌바 Tarceva
	아파티닙 Afatinib	지오텐 Gilotrif
	크리조티닙 Crizotinib	젤코리 Xalkori
	베바시주맙 Bevacizumab	아바스틴 Avastin
	세특시맙 Cetuximab	얼비투스 Erbitux
유방암	트라스투주맙 Trastuzumab	허셉틴 Herceptin
	라파티닙 Lapatinib	타이커브 Tykerb
	퍼투주맙 Pertuzumab	퍼제타 Perjeta
	트라스투주맙엠탄신 Trastuzumab emtansine	캐싸일라 Kadcyra
위암	트라스투주맙 Trastuzumab	허셉틴 Herceptin
	라무시루맙 Ramucirumab	사이람자 Cytamza
대장암	베바시주맙 Bevacizumab	아바스틴 Avastin
	세특시맙 Cetuximab	얼비투스 Erbitux
	레고라페닙 Regorafenib	스티바가 Stivaga
간암	소라페닙 Sorafenib	넥사바 Nexavar
	레고라페닙 Regorafenib	스티바가 Stivaga
	렌바티닙 Lenvatinib	렌비마 Lenvima
신장암	수니티닙 Sunitinib	수텐 Sutent
	소라페닙 Sorafenib	넥사바 Nexavar
	파조파닙 Pazopanib	보트리엔트 Votrient
	엑시티닙 Axitinib	인라이타 Inlyta
	에베로리무스 Everolimus	아피니토 Afinitor
	베바시주맙 Bevacizumab	아바스틴 Avastin
	템시롤리무스 Temsirolimus	토리셀 Torisel
방광암	아테졸리주맙 Atezolizumab	티센트릭 Tecentriq
췌장암	엘로티닙 Erlotinib	타쎌바 Tarceva
두경부암	세특시맙 Cetuximab	얼비투스 Erbitux
위장관기질종양 (연조직육종)	이매티닙 Imatinib	글리벡 Gleevec
	수니티닙 Sunitinib	수텐 Sutent
	파조파닙 Pazopanib	보트리엔트 Votrient
	레고라페닙 Regorafenib	스티바가 Stivarga
	올라라투맙 Olaratumab	라트루보 Lartruvo
뇌종양 (교모세포종)	베바시주맙 Bevacizumab	아바스틴 Avastin
갑상선암	소라페닙 Sorafenib	넥사바 Nexavar
	반데타닙 Vandetanib	카프렐사 Caprelsa
	렌바티닙 Lenvatinib	렌비마 Lenvima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의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명과 성분명】

-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적항암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첨4】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

1.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초진일			

2. 약물치료 내용

진단명 ^{주1)}		질병분류번호 ^{주2)}	
발병일		진단일	
의약품 명칭(제품명)		주 성분명	
제약회사 명칭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내 투약여부	<input type="checkbox"/> 범위 내(On-label) <input type="checkbox"/> 범위 외(Off-label)	최초 처방(투약)일	
급여적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급여 <input type="checkbox"/> 비급여	허가범위 외 (Off-label)사용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사결과	<input type="checkbox"/> 사전승인·기승인 <input type="checkbox"/> 사후승인·심사중 <input type="checkbox"/> 불승인(거절)
비급여 약제사용시 허가사항(효능효과)내 사용근거 및 소견			

주1) 정확한 보험금 산정을 위해 암이 발생한 부위에 대해 모두 기재 바랍니다.

주2) 질병명에 기재된 모든 암에 대한 질병코드를 기재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네자리 코드(C**.*)를 원칙으로 하되, 세자리코드(C**)도 기입 가능합니다. 가급적 병기분류 가능한 코드로 기재 바랍니다.

※ 기재하신 내용이 확인되는 의무기록 및 투약내역(처방전, 진료비계산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후승인·심사중”에 청구되는 경우(심사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 사후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통보 이후 보험금청구 접수(심사)가 가능합니다.

3. 확인자 내용

상기와 같이 처방(투약) 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의료기관명			
진료과명		면허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의사 성명	(인/서명)

※ 당사 보험금 청구서 양식 외 요양기관의 자유양식을 제출하실 수 있으나, 상기 내용이 필수 내용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이는 전문의사 확인을 통해 작성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